

건설기계등록원부 [ ] 등본 [ ] 발급  
[ ] 초본 [ ] 열람 신청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접수번호        | 접수일자          | 처리기간                    | 즉시 |
| 신청인         | 성명            |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| (전화번호: )                |    |
| 건설기계        | 등록번호(또는 차대번호)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건설기계<br>소유자 | 성명(명칭)        | 주민등록번호(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) |    |
|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| (전화번호: )                |    |
| 신청<br>내용    | 발급            | ( )부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열람            | ( )부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용도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

[ ] 등본 [ ] 발급  
[ ] 초본 [ ] 열람 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없음 | 수수료<br>- 열람: 1건당 100원<br>(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)<br>- 발급: 1건당 500원<br>(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) |
|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작성방법

-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(초본)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. 다만,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,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(초본)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.
-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청인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.
-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저당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(저당권 또는 압류 설정 시의 소유자)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.

처리 절차

